〈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10013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02.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08]

www.glassesfc.com

cs@yoonhyeon.com

아이패밀리

정보공개서

윤현파트너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윤현파트너스(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 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했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25호, 426호, 1611호(가산동, 케이에스타워) Tel 02-858-4533 유현파트너스(주) 가맹사업팀 (Tel 02-858-453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 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이패밀리 외4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25호, 426호, 1 케이에스타워)				., 1611호(가산동,	
윤현파트너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헌호	대표팩스번호
스(주)	2023.05.23	2023.06.01	백진성	02-858-4	533	-
	법인등록번호 120111-1310458 사업자등록번호 205-8		205-87-0311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2	25호, 426호, 1611
		아이패밀리	호(가산동, 케이어	에스타워)	
사내이사	백진성	외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진성	02-858-4533	_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2	25호, 426호, 1611
		아이패밀리 외4	호(가산동, 케이	게스타워)	
감사 이유나	이유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진성	02-858-4533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디지털안경프 라자	디지털안경프라 자	2023.06.12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7 지하 1층	김진선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쇼웍스베이 스	바라보다 아이패밀리 안경창고킹싸군	2024.03.01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4길 3(동교동)	조정원
일부를 인수함	지비컴퍼니(주)	글라스밤	2024.12.01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22번길 30. 206동 101호	유인영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이패밀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이패밀리 eye Family	
상 호	아이패밀리 안경 OO점	
상표(서비스표)	eye Family	등록번호: 4102737530000
광 고	_	_
그 밖의 영업표지	_	_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	-	_	-	-	-
2023년	1,190,644	851,717	338,926	6,800	-153,100	-161,073
2024년	1,493,266	1,639,492	-146,226	244,492	-452,645	-485,152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처위,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 명	처 지이	사업경력			
산년역구	78 F8	성명 현직위	기 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백진성	대표	2023.05.23. ~ 현재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선턴	이유나	감사	2023.05.23. ~ 현재	감사	회사업무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八名	상근	비상근	격천구(경)	
2024년 12월 31일	2	_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윤현파트너스 (주)	가맹사업 경영		오늘의안경(등록번호:20230807)이라는 영업표지의 도소매업

		경영
		바라보다(등록번호:
가맹사업 경영	2024.03.01.~현재	20130100136)이라는
		영업표지의 도소매업 경영
		안경창고킹싸군(등록번호:
가맹사업 경영	2024.03.01. ~현재	20160510)이라는 영업표지의
		도소매업 경영
		글라스밤(등록번호:20213521)
가맹사업 경영	2024.12.01 ~ 현재	이라는 영업표지의 도소매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eye Family (상표/서비스표)	상표사용	출원일자 2012.12.27 등록일자 2013.11.21	출원번호 4120120043301 등록번호 4102737530000	윤현파트너스(주)	2023.11.21 (2023.11.2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아이패밀리]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3년 1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없음)

2. [아이패밀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엔비코퍼레이 션	아이패밀리	김석현	2013.01 ~ 2020.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301-1호
㈜이엔비코퍼레이 션	아이패밀리	조정원	2020.04 ~ 2021.0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301-1호
㈜쇼웍스베이스	아이패밀리	조정원	2021.07 ~ 2024.02.29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4길 3(동교동)
윤현파트너스(주)	아이패밀리	백진성	2024.03.01. ~현재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25호, 426호, 1611호(가산동, 케이에스타워)

3. [아이패밀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이패밀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도소매	안경테, 선글라스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이패밀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	23	-	21	21	_	20	20	-
서울	8	8	-	7	7	-	6	6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2	2	-	2	2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_	-	-	-
세종	-	-	-	-	-	-	-	-	-
경기	9	9	-	9	9	-	9	9	-
강원	-	-	-	-	-	-	-	-	-
충북	2	2	-	2	2	-	2	2	-
충남	-	-	1	-	-	-	-	-	-
전북	-	-	-	-	-	_	-	-	-
전남	-	-	-	-	-	_	-	-	_
경북	-	-	-	-	-	-	-	-	-
경남	1	1	-	-	-	_	-	-	-
제주	_	_	_	_	_	_	-	_	_

5. 바로 전 3년간 [아이패밀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6	0	3	0	0	23
2023	23	0	2	0	0	21
2024	21	0	0	1	0	20

6. [아이패밀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어어꼬기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영업표지 등록번호		집중	2022.12.31.	2023.12.31	2024.12.31.	
		오늘의안경	20230807	도소매업	0/1	1/0	3/0	
가맹본부	윤현파트너	안경창고 킹싸군	20160510	안경	25/2	25/0	16/0	
	스(주)	바라보다	20130100136	도소매업	16/0	15/0	11/0	
		글라스밤	20213521	도소매업	8/0	10/0	10/0	

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가맹계약서 상 공급물품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안경의 특성 상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우며, POS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에서 자점매입을 통해 제품을 자체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만 본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그 일부 가맹 점도 전체 매입제품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 을 추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는 허위, 과장된 정보가 될 수 있으므 로 추정결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아이패밀리] 가맹점사업자의 연 평균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가맹점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 허위, 과장된 가상의 추정치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아이패밀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이패밀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	20	3,65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아이패밀리]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아이패밀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기간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7,900	(비공개)	-	

광고	(비공개)	여주	17.000	(비공개)	=	
판촉	(비공개)	120	47,900	(-16711)	-	

▶ 당사는 아이패밀리 외에 다른 가맹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아이패밀리 에 사용한 광고 및 관촉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전 지점	_	1566-2566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IBK기업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IBK기업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IBK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IBK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시 필요서 류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인터넷을 통해 예치 시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윤현파트너스(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이패밀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처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00]		*가맹점 오픈 이전 해지시	*가맹점 오픈 이전	
	계약금	1,000		의선 애시시 일부반환 단, 가맹점	가맹점사업자 의 변심에	
가맹비	가입비	1,0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오픈 이후에는 의한 해지 시 가맹사업법상 위약금으로 가맹금 반환 일부 반환될		
71.9 1	상권개발비	500) पम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 없음	
	점포경영컨설팅	500		한 반환되지 않음	이전에 소멸되는 비용	

- 2) 당사는 현재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보증금 조로 수령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 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힘	계	3,000		
	계약금	1,000		
ત્રી મળે મો	가입비	1,000		
가맹비	상권개발비	500		
	점포 경영컨설팅비	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호만 공동 사용하고,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유선택에 맡기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 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안경사 면허증 소지자, 당사와 협의된 점포보유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 나. 기타 교육에 대한 기준은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자가 공급할 것을 강제(의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 3~5]과 같습니다.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표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회비	가맹본부	월 200	익월 5일 10일	후불제로 반환대상 아님	후불제로미반 환	간판사용 및 상호사용료
개점이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교육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교육 후 익월까지	교육전 취소	교육실시 후 미반환	
개점이후 특별교육	가맹본부	협의	교육 후 익월까지	교육전 취소	교육실시 후 미반환	
개점이후 재교육	가맹본부	협의	교육 후 익월까지	교육전 취소	교육실시 후 미반환	
판촉분담비	가맹본부	아래 참조	판촉 후 익월까지	판촉활동을 실시하지 않은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안됨	
광고분담비	가맹본부	아래 참조	광고 후 익월까지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실시 후 반환안됨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3~34 페이지 참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당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공동 판촉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판촉물제작실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공동 판촉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판촉물제작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 공동 광고 시
- 브랜드 광고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 브랜드 광고 +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는 가맹본부 60%, 가맹점사업자 40%
-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는 가맹본부 100%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024년 가맹점에 납품하고 발생한 물류수익을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수로 나눈금액입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 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 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양수인의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따라 잔여기간만큼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아이패밀리 가맹본부와 신규가맹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아이패밀리 가맹본부와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며 신규가맹계약한 양수인은 아이패밀리가맹본부에 최초가맹금인 (3,0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경업금지 기간

계약기간 중에 아이패밀리와 같은 동종 업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당사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아이패밀리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 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 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아이패밀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 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없음 : 당사의 아이패밀리는 소매업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이패밀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아이패밀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아이패밀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품목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고객판 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만 집중 팀쉬	가맹본부	계열회사	
안경 관련 물품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오늘의안경, 안경창고킹싸군, 바라보다, 글라스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② ③ ④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I 여부 회사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이패밀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이패밀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아이패밀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 및 가맹점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설비 및 장비 등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나)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 및 가맹점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면허・승인・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 및 가맹점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의 외관, 집기・시설・설비, 장비・비품・소품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교체, 반환, 제거・철거, 개・보수 및 유지・보수를 지시・요청하였으나이를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라) 물품 및 용역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당사의 3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경고한 경우 마)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당사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당사의 가맹사업 및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제1항 제2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다가트 라이코 가이 가이키 바세워트 커이 카메워가에게 레워져 비 페이어 웨키쳐 스	약조문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위반의 사실을 구체적의	
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통지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갑"의 협조 요청에 불응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및 가맹점 관리·운영과 관련한 "갑"의 기본정책 또는 영	
업방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갑"에 대한 각종 대금지급의무를 1회 또는 일부라도 지연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갑"이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	
련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갑"과 약정한 광고·홍보 및 판촉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갑"의 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을 본 계약 이외	
의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이를 위조·변조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승인없이 임의로 광고·홍보 및 판촉	
활동을 위한 광고물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광고·홍보 및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갑" 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 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POS, ERP 및 VAN 시스템에 정보	-1100 - 7
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제23조
11. 가맹점사업자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승인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업체로부터	제2항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거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는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노후화된 외관, 집기·시설·설비, 장비·비품·소품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에 대한 "갑"의 교체, 반환, 제거・철거, 개・보수 및 유지・보수	
지시나 요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 및 가맹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정책, 영업방침 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 행위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한다.)	
13. 가맹점사업자가 "갑"으로부터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을 받고도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재정상태 기타 사회생활상의 중대한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갑"의 가맹사업 운영 및 가맹점 관리 •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또	
는 영업 방침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을 시위・선동하	
거나 협박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유포하여 "갑"의 명예ㆍ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갑"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시위·선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가맹	
사업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갑"과 가맹점사업자 이외의 다른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신뢰,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18. 기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기	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시된 경우	제23조	: 제3항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23조	: 제3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	: 제3항
7 L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가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가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23 <i>조</i>	: 제3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제23조	: 제3항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 제3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3조	: 제3항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23조	: 제3항
Ó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3조	: 제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 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혐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 사유 발생 → 당사 통지(3개월 이내)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대리행사 사유 발생 → 당사 통지 → 당사 승인 → 대리권 행사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당사 승인 범위 내	업무위탁 사유 발생 → 당사 통지 → 당사 검토 및 승인 → 위탁 업무 실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아이패밀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안경과 같은 시력교정 물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이패밀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30 ~ 22:00 (12.5시간)	주6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팀 (070-7620-87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사전 협의 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는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 수적으로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一一一	3 L 3 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미끄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광고비 50% 중	광고 계획 공고 →	
	브랜드청포	50%	1/가맹점수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전체
전국	브랜드광고+가	광고비의	광고비 40% 중	결정 → 가맹점부담액	가맹점의
광고	맹점모집광고	60%	1/가맹점수	제시(명세서)	50% 이상
	가맹점	100%	_	_	동의 시
	모집광고	100/0			
개별:	광고 및 판촉	-	100%	_	
	판촉행사	기획 및 디자인 본사부담	제작실비부담 (100%)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파촉 활동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 등을 부과합니다.

- 1) 귀하께서 당사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제26조(경업금지), 제27조(권장 소비자가격의 준수) 및 제29조(영업비밀의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금 2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귀하께서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권고, 시정조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 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당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관련된 통보 및 처분 등을 받는 경우 위약별로 금 2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가 허위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유포하여 당사의 명예 및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약벌로 금 2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 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매 1일당 금 오십만원 (₩500,000원)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위, 부가세 포함)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3,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화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音工艺6/11记 4月1	비용항목	비용비율	시 표 교시	제외사유	0177
○점포의 시설, 장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가맹점사업자	○점포환경개선일	
비, 인테리어	이인테라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의 비용 청구	로부터 3년 이내	
등의 노후화가	(장바집기의 교체	않는 점포환경개선	(공사계약서 등	에 가맹본부의	
객관적으로 인정되	비용을 제외한	: 20%	공사비용을 증	책임없는 시유로	
는경우	실내건축공사에	ㅇ점포의 확장 또는	빙할 수 있는	계약이 종료(계약	
0위생이나 안전의	소요되는 알웨기 바용	이전을 수반하는	서류 첨부) →	의 해자 영업양도	
결함으로 인하여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90일 이내에	포해되는 경우	
가방 업의 통일생을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유자하기 어렵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액을 가맹점사	액 중 잔여기간	
정상적인 영업에	추가 공시를 실시		업자에게 지급	에 비례하는 부	
현저한 지장을	함에 따라 소요되는		(단, 가맹본부와	담액은 지급하지	
주는 경우	비용은 제외)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별도의 합의가	지급한 경우에는	
			있는 경우 1년	환수 가능	
			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위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애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1 1 1 10/6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70-7620-872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070-7620-8721)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이패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신제품 교육(상품별 특징) 매장 운영 노하우 교육	집단강의	내용에 따라 상이	무료
특별교육	전문강사 초빙, 워크샵	집단강의	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재교육	가맹점 관리 교육, 직원 교육	집단강의	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이패밀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점 전 교육훈련비용은 무료입니다. 개점 후 실시되는 교육비용은 교육 실시 전에 통지 후 실비로 청구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종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및 훈련 불참 시에는 가맹계약서 제 45조, 제 46조에 따라 계약갱신의 거절 및 가맹점운영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_

- ▶ 당사는 아이패밀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70-7620-872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 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영업표지)

이미지	구분	상품분류	등록권리자	등록번호(등록만료일)
eye Family	문자상표	35류(10판)	윤현파트너 스(주)	4102737530000 (2023.11.21)

별첨 2 재무제표(202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제표(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기본 인테리어 공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기타설비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간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본부용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윤	현파트너	ქ스(주)		영업표지	아이패밀리
	정보공개서, 기		.,		근서를 제공받은 경우 공받았습니다 ."라고	우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합니다.
제공확인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윤현파트너스(주) 대표자 <u>백 진 성</u>(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윤현파트너스(주)				영업표지	아이패밀리
	정보공개서, 기		.,		서를 제공받은 경약 공받았습니다 ."라고	우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합니다.
제공확인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윤현	현파트너스(주)	대표자 _	백 진	성	(인)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